

대구광역시 논공읍 공고 제2021-11호

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고지서 3월 반송추기분 공시송달

- 공고대상 : 객*철 등 2건 (“붙임” 참조)
- 공고기간 : 2021. 3. 30. ~ 2021. 4. 15.
- 공고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 등의 가입 의무)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가입촉구안내문, 처분사전 통지서,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등

1.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안내문,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.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(공제)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이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)를, 해당 의무보험 과태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서를 2021년 4월 15일(목)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(☎ 053-668-5491, FAX:053-282-7811)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,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에 의거 귀하의 재산(급여)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차진 납부 시 20% 범위 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3%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이 합산(최대60개월)되어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최대 75%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021년 3월 30일

달 성 군 논 공 읍 장

